

(최신 판례)

3. 판결 청구이의 사건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1. 쟁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2.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둬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제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그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 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 청구 채권자

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해설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서는 압류가 추가로 들어올 경우에는, 향후 배당을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전체 채권금액을 공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전체 금액을 지급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실제로 공탁을 했을 경우, 채권자가 배당 받을 금액만을 가져가도록 하여, 제3채무자의 의무가 절차협조의무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공탁절차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나 채권액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와 상대방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꾀하고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